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32

발의연월일: 2021. 5. 14.

발 의 자:이용우·고영인·노웅래

민병덕 · 송재호 · 오영환

이소영 · 정필모 · 홍기원

홍성국 · 홍정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주식, 채권 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시세가 급등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음. 따라서 가상자산을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등과 같이 재산의유형에 포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탈세를 목적으로 금융자산을 활용하여 재산을 은닉하려는 시도가 적발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은 실정임.

이에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재산과 관련한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의안번호 제99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업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가상자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재산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산등록이나 변동사항 신고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생 략)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현행과
	같음)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	②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동산·증권·채	3
권·채무 및 지식재산권(知識	
財産權)	
가. ~ 카. (생 략)	가. ~ 카. (현행과 같음)
<u><신 설></u>	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
	<u>산</u>
4. • 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